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33호 2017. 12. 19. (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603호 정선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정선군 조례 제2604호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3
○ 정선군 조례 제2605호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정선군 조례 제260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정선군 조례 제2607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 정선군 조례 제2608호 정선군 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 일부개정조례 ······34
○ 정선군 조례 제2609호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39
○ 정선군 조례 제2610호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43
○ 정선군 조례 제2611호 정선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49
○ 정선군 조례 제2612호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 정선군 조례 제2613호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 정선군 조례 제2614호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 정선군 조례 제2615호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69

【규　칙】

- ❍ 정선군 규칙 제1295호 정선군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6
- ❍ 정선군 규칙 제129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84
- ❍ 정선군 규칙 제1297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8
- ❍ 정선군 규칙 제1298호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조 례

제241회 정선군의회(2017.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9일

정선군 조례 제2603호

정선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상징물 조례"를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의"를 "정선군을 상징하는"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을 "(상징물의 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때에는 상징물 관리 매뉴얼의 관련 규정에 따라"를 "경우에는 지정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징물 사용승인신 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용 승인(변경) 신청이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선군 상징물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중 "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가 승인사항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로, "때에 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조제1호,제2호, 제4호,제8호"를 "제3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경우"를 "각 호의 경우에

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제8조제2항제3호 중 “제3조제4호,”를 “제3조제4호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위원회 운영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상징물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제2항 중 “심사를 위하여필요”를 “심의에 필요”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단체명)	
	대표자(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		

※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정선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제 출 서 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되는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 상징물 조례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선군을 상징하는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마스코트, 각종 상 표, 동물, 식물, 브랜드슬로건 등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 호-----.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개발, 지정, 변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정선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 경우--.
제5조(상징물 관리 등) ① (생 략)	제5조(상징물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4호, 제8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징물 관리 매뉴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 경우에는 지정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4호,제8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 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 변경시에는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있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료 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정선군 상징물 사용 승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용 승인(변경) 신청이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선군 상징물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 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 자가 승인사항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 경우에는 -------------------.
제8조(사용료) ①제3조제1호,제2호, 제4호,제8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제3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8호--.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각 호의 경우에는 ---------------.
1. 군이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는 경우	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3조제4호, 제8호의 상징물을 농협이나 농업법인, 농업인이 사용하는 경우	3. 제3조제4호 및 --
4. 기타 군수가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생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정선군 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 위원회는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1. 제4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기타 상징물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상징물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심의에 필요---.
제11조(위반사항 조치) 군수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4호,제8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필요-------------------------.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를 정비하며, 정선군이 후원하는 행사와 사업에 대한 사용료 면제사항을 추가하고
○ 상징물의 사용신청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행정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선군 상징물 조례를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지정 매뉴얼에 따른 사용을 규정함. (제5조)
○ 사용료 면제 사항을 군이 후원하는 행사도 포함하도록 개정함. (제8조제2항제1호)
○ 일부 사용신청 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추가(별지 제1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확인 동의
○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법제처 협업과제) 정비
  - 관련법률 위반사항 조치 규정 삭제(제11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휘 정비

제241회 정선군의회(2017.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9일

정선군 조례 제2604호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읍·면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제6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생 략)	제2조(이장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기타</u>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5. <u>그 밖에</u> -------------------
제4조(실비변상) ①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u>읍・면공무원</u>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실비변상) ① -- <u>공무원</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3. 상해보험가입</u>	<u>3. 상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u>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u>기타</u>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본조 신설 2006.12.29.>	8. <u>그 밖에</u> ---

제안이유

이장 건강검진 지원을 통한 이장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이장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조항 중 건강검진을 신설함. (제6조제3호)

제241회 정선군의회(2017.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9일

정선군 조례 제2605호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 중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의 제목을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로 하고 별표 사무소의 명칭 중 "신동읍사무소"를 "신동읍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표 중 "남면사무소"를 "남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며, 같은 표 중 "여량면사무소"를 "여량면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표 중 "북평면사무소"를 "북평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며, 같은 표 중 "임계면사무소"를 "임계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

사무소의 명칭	소 재 지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31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
사북읍 행정복지센터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65
신동읍 행정복지센터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
화암면 행정복지센터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
남면 행정복지센터	정선군 남면 칠현로 80
여량면 행정복지센터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
북평면 행정복지센터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6
임계면 행정복지센터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복지센터 --.
제2조(소재지)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2조(소재지) ---- 행정복지센터------------------------------.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읍·면·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맞춤형복지팀 권역 형 시행 읍·면인 신동읍·남면·여량면·북평면 ·임계면사무소의 명칭 변경 추진

주요내용

○ 제명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신동읍·남면·여량면·북평면·임계면사무소 명칭을 각각 “신동읍 행정복지센터”, “남면 행정복지센터”, “여량면 행정복지센터”, “북평면 행정복지센터”, “임계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제2조)

제241회 정선군의회(2017.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9일

정선군 조례 제260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97명"을 "60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86명"을 "59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01	601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577**	**577**				
4급	1	1				
4급 . 5급	3	2		1		
5급	25	10	2	3	1	9
6급 이하 계	547	547				
전문경력관 계	1	1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19**	**19**				
지도관	2			2		
지도사	17	1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9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86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601명이며---------------. 1. -------------- 590명 2. (현행과 같음)

제안이유

○ 저출산 대응체계 전담인력 및 가축질병(AI) 대응체계 보강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
○ 읍면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에 따른 맞춤형 복지 인력 증원 등 정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주요내용

○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597명→601명 (증 4명)
 - 집행기관의 총수 : 586명→590명 (증 4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변동 없음)
○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별표 3)
 - 4급 · 5급 : 본청(2), 직속기관(1) : 변동없음
 - 5급 : 본청(10), 의회(2), 직속기관(3), 사업소(1), 읍면(9) : 변동없음
 - 6급이하 : (543) ⇒ (547) (증 4명)

제241회 정선군의회(2017.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9일

정선군 조례 제2607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를 따른다.

제24조제1항 중 “해지하고”를 “해지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각하여야 한다”를 “매각할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후단을 삭제한다.

제37조의 제목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을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를 “잔액을 분할 납부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지 를”을 “부지를”로,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를 “잔액을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를 “잔액을 분할 납부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를 “잔액을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를 “잔액을 분할 납부하게”로 한다.

제37조의2 중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를 “잔액을”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63조제2항 중 “보상금을 지급”을 “지급”으로,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를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영 제82조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를 따른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해지할 수 있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③ -- 매각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 ① (생 략)	제34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의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	② --분할 납부하게----------. <후단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 잔액을 분할 납부하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 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부지를 --- 잔액을 분할 납부하게 ---.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잔액을 분할 납부하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잔액을 분할 납부하게 -------------------------------.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 잔액을 분할 납부하게 ------------------------------.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 잔액을 -------------------

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第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	第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후단 삭제>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 략)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지급 --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영 제82조를 따른다.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 임의규정을 기속사항으로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 해소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주요내용

○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제16조)
-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에 따라 무상사용을 허가 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4조제1항)
-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4조제3항)
-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 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제5항, 제37조의2, 제62조제1항, 제63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2017.7.26. 시행)으로 분할납부 이자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

○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3조제2항)
-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1회 정선군의회(2017.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 선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9일

정선군 조례 제2608호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를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임사생"을 "입사생"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군"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정선군"을 "군"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사 신청서(별지 서식)에 다음 각호"를 "별지 서식 향토학사 입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강진단서

제6조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확인원
2. 수급자 증명서
3. 장애인 증명서

제9조제1호 중 "80%"를 "8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10%"를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학생기숙사 규정”을 “학생생활관 선발 지침”으로 한다.
제12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향토학사 입사 신청서

신청자	학 교 명	대학교 대학 과 년		
	주 소			
	성 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전화번호	
	출 신 학 교			
	졸업년도	학 교 별	소 재 지	
	년	초등학교	시(군) 동(읍·면)	
	년	중 학 교	시(군) 동(읍·면)	
	년	고등학교	시(군) 동(읍·면)	
보호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관 계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제6조에 의거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성적증명서 1부. 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1부. 3. 건강진단서 1부.	1. 국가유공자 확인원 2. 수급자 증명서 3. 장애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선군에서 출연하여 건립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의 임사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입사생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향토학사”라 함은 군에서 출연하여 춘천시 소재 강원대학교에서 건립·운영하는 기숙사시설을 말한다.	1. --------------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군수는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30일전까지 언론매체, 군보,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그 밖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
제4조(입사신청 자격) 친권자나 본인이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춘천시 소재 전문대학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 한다.	제4조(입사신청 자격) ------------- 군--.
제5조(자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자격을 제한 한다.	제5조(자격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감염성 -----------
제6조(입사신청)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입사 신청서(별지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사신청) ① -------------- 별지 서식 향토학사 입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강진단서(보건소, 건강관리협회, 국ㆍ립병원 발행분에 한함)	3. 건강진단서
4. 기타 증명서(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증명서)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 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확인원 2. 수급자 증명서 3. 장애인 증명서
제9조(선발기준) 향토학사 입사생은 다음 각호의 비율에 의한 점수로 환산하여 선발 한다.	제9조(선발기준) ---.
1. 성적 80%(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점수, 재학생은 전학년 평균점수)	1. --- 80퍼센트---
2.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10%	2. -- 10퍼센트
3. 군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10%	3. ---------------10퍼센트
제11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제11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입사 포기자 또는 강원대학교 학생기숙사 규정에 의해 생활관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입사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	② ---------------------------- --- 학생생활관 선발 지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제안이유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과 이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명 띄어쓰기를 바르게 함
○ 잘못 표기된 용어 수정 및 조문을 정비함.
(제1조~제4조, 제9조, 제12조)
○ 향토학사 입사생 자격 제한 용어를 정리함 (제5조제2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민원서류 감축을 추진함.
(제6조제2항)
○ 향토학사 퇴사 관계 조항을 변경함. (제11조제2항)

제241회 정선군의회(2017.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9일

정선군 조례 제2609호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를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원의집(이하“후원의집””을 “후원의 집(이하 “후원의 집”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애산리 432-201번지”를 “녹송 4길 69-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봉산리 393-1번지”를 “바위안길 43”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1에 해당하는 자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국민기초생활 보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필요할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정선군공유재 산관리조례”를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제2조(위치) 암헌 후원의집(이하"후원의집"이라 한다)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선지역 :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32-201번지 2. 임계지역 :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393-1번지	제2조(위치) --- 후원의 집(이하 "후원의 집"---------------- 각 호-----. 1. -------------------- 녹송 4길 69-10 2. -------------------- 바위안길 43
제4조(입주자 자격) ①입주자는 태풍,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중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해서 정선군에 거주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해이재민이 아닌 무주택자중에서 생활정도,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주시킬 수 있다.	제4조(입주자 자격) ① -- 사람이어야 --. ② ----- 규정에도 --- 사람을 ------------.
제5조(입주자 선정) ① (생 략)	제5조(입주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4조제1항의 입주자격을 가진 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 여야 한다.	② ---------------------- 사람 중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허가 등) ①읍·면장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후원의집 입주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여 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 ① --------------------- 사람에게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입주자 의무 등) ① (생 략)	제7조(입주자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입주자는 후원의집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각종 지시사항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어느 하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입주자격 상실) ①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입주자격 상실)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후원의집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1. ---------------- 필요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후원의집에 계속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6. 그 밖에 ---
제11조(준용) 후원의집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공유재 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준용)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안이유

○ 도로명 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에 근거하여 지번으로 표기되어 있어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상위법령의 띄어쓰기를 적용함.

주요내용

○ 제명을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에서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로 변경함.

○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 (제2조)

- 암헌후원의 집(2개소)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 법령명 띄어쓰기 적용함.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함.

제241회 정선군의회(2017.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9일

정선군 조례 제2610호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선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당연직과 제3조제4항제1호”를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간사 및 서기)”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선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삭 제>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삭 제>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과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생 략)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제3조제2항제3호--.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로복지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안이유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정선군 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리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 (제3조제1항, 제2항)
  -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개정함
  - 위촉직 위원 구성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정선군 소속 공무원으로 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으로 개정함.
○ 정선군 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리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경로복지담당에서 장애인복지담당으로 개정함. (제8조)

제241회 정선군의회(2017.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9일

정선군 조례 제2611호

정선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정선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체계 및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 평가역량의 강화와 공정한 평가를 통한 청소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수집ㆍ운반대행업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수 집・운반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3. "대행업체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 집・운반서비스를 능률적ㆍ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체계적 평가를 말한다.

가. 주민만족도 평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 부터 평가 받아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

나. 현장평가단 평가: 가목에 따른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그 작업효율성 및 경영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

다. 실적서류 평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

제3조(적용범위) 평가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 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평가시기 및 대상) ① 군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
2.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적서비스에 관한 책임성

제2장 평가실시

제5조(평가배점 등) ① 평가는 주민만족도ㆍ 현장평가단 및 실적서류 평가의 항목에 따른 3단계로 실시한다.

②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하되,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2. 현장평가단 평가: 40점
3. 실적서류 평가: 30점

③ 제1항에 따른 항목별 평가내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지침(이하 “평가지침”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해당 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
2. 주민만족도ㆍ현장평가단 및 실적서류 평가 등 구체적 평가방법
3.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4. 평가받을 준비요령
5. 그 밖에 군수가 각종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평가의뢰 및 결과통지 등) ① 군수는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 당 대상 업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업체 수행 업무의 효과적 평가를 위하여 주민, 관계 공무원, 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하여 해당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가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대행업체의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정선군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 한다.

1. 평가지침 및 세부 평가계획의 수립 · 시행
2. 주민만족도평가 · 현장평가단 평가 및 실적서류 평가결과와 이의신청
3. 평가결과의 활용
4. 인센티브 제공 및 계약해지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평가실시에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청소 ·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 시민단체 소속 3명 이내
2. 사회적 덕망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 · 위촉해제 ·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평가결과 활용

제12조(정책반영 및 표창 등) ① 군수는 평가결과를 청소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 수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해당 평가결과 모범 사례를 전파하는데 노력한다.

③ 군수는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조치사항 등) ① 군수는 평가결과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의 5단계로 등급화 하여 관리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의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적용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 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비밀엄수) 평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중인 사람은 해당 업무수 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내용 및 방법(제5조제3항 관련)

항 목	평가내용	평가방법
1. 주민만족도 평가	수거의 적시성, 청결성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 현장평가단 평가	현장성을 위하여 수거 후의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 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평가표를 통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3. 실적서류 평가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민원처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관한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평가한다.	담당부서 공무원이 대행업체에서 제공한 서류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별표 2]

평가결과

등 급	평가점수	적 용
탁 월	90점 이상	표창, 예산범위에서 우대지원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영업정지 1개월
부 진	60점 미만	영업정지 3개월

등급 및 적용(제13조제2항 관련)

※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 해지 가능

제안이유

정선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의 체계 및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 평가역량의 강화와 공정한 평가를 통한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용어를 정리 함.(제2조)

1) 생활폐기물: 정선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2호의 폐기물을 말함.

2) 수집·운반대행업체: 정선군수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자를 말함.

3) 대행업체 평가: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

○ 평가시기를 매년 한차례 이상 평가로 정함. (제4조제1항)

○ 평가대상: 정선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정함. (제4조제2항)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의 총점은 100점,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현장평가단 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으로 함. (제5조)

○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에서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제10조)

제241회 정선군의회(2017.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9일

정선군 조례 제2612호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선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60조제3항에 의거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전염병 방재활동 등”을 “감염병 방재활동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직) ① (생 략)	제4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정선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60조제3항에 의거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생 략)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8. 감염병 방재활동과 --------------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10조(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삭 제>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육) ① (생 략)	제13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 및 단원은 연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 조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및 단원에 대한 교육 이수 조문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 하고자 함.

주요내용

○ 단장 및 부단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군수가 임명 하도록 개정함. (제4조제2항)

○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의 원칙을 단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단장 또는 군수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함. (제9조제1항)

○ 임원 및 단원의 교육 이수 의무시간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임 규정이 없음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제13조)

제241회 정선군의회(2017.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9일

정선군 조례 제2613호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정선군의회 의장이”를 “정선군의회에서”로 한다.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제1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5조 및”을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제5항”을 “영 제2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군수가 되며”를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정선군의회에서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 ⑬ (생 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제12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2조(협의체의 기능) ---------------------------------------.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문과 결정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신 설>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제25조(구성・운영)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경관위원회(이 조례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영	제25조(구성・운영) --- 영 제25조, 영 제26조

제25조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및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조례개정 권고사항 등의 반영으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함.

주요내용

○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중 위법소지가 있는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제11조제1항제5호)
○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제12조)
○ 경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조항 추가(제25조)
○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제26조)
 1)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법률 근거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2)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

제241회 정선군의회(2017.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9일

정선군 조례 제2614호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자가용자동차 등”을 “자가용자동차”로 하며,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35만원”을 각각 “4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가용자동차 등”을 “자가용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3만원”을 “4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부당요금징수”를 “합승, 부당요금징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반일시”를 “위반일시”로 한다.

제5조 중 “서식의 대장”을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대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규모는 당해 연도 50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타인명의”를 “타인명의”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대장

일련번호	접수일	신 고 인			피 신 고 인		신 고 내 용	처분 결과	포상지급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 주 소	성 명 (업체명)	차량번호 / 주 소			일시	금액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조(신고 및 포상) ① --.
1. (생 략)	3.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82조의 자가용자동차 등의 노선운행 행위(모텔, 찜질방, 펜션 등)	4. --------- 자가용자동차---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생 략)	1.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35만원	1. ---------------------- 40만원
2. 대여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35만원	2. --------------------- 40만원
3. 자가용자동차 등의 노선운행 행위(모텔, 찜질방, 펜션 등): 10만원	3. 자가용자동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다른 지역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3만원	5. ------------------------ --- 40만원
5의2. (생 략)	5의2. (현행과 같음)
6. 지역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개인택시 대리운전행위: 5만원	6. --------------- 합승, 부당요금징수------------------ ---
제4조(신고방법)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신고방법) ------ 위반일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접수 및 처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대장에 기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 및 처리) --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대장-----------------------.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 ①·② (생 략)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조제1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직접 고발하여 그 처분결정서를 접수한	③ ----------------------- 관계기관--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동일인이 같은 차량을 일자를 달리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신고하여 병합되어 처분된 경우 포상금의 지급은 1건으로 한다.	<삭 제>
⑦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규모는 당해 연도 50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타인명의로 신고된 것이 확인될 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⑦ 타인명의---.

제안이유

○ 지역 내 자가용자동차 및 대여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와 타 지역 택시의 불법적인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여
○ 건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조성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상향조정함.(제2조)
○ 신고 시기 및 지급시기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신고율을 높이고자 함. (제4조, 제6조 제3항)
○ 포상금의 지급한도 및 지급건수 제한사항을 삭제함.
(제6조제6항, 제7항)

제241회 정선군의회(2017.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9일

정선군 조례 제2615호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따른다.

제3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자금의 전용 금지)”를 “(전용금지)”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정선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따른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하수도사용료 및 점용료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비용 5.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비용 6.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가 협의·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 8. 오염하천정화사업비 9.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제3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수질오염방지사업비	
제4조(수질개선사업)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강수계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추진사업 2.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삭감사업 3.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한 오염원 관리사업 4. 오염하천 정비사업 5.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삭감사업 등	<삭 제>
제5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2호, 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 리시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3.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	<삭 제>

시설 4. 하천 및 호소의 정화를 위한 인공습지 5.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인공습지 및 저류시설(관로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6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삭 제>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삭 제>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자금의 전용 금지) (생략)	제9조(전용금지) (현행과 같음)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 필요-------------------------.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함.

주요내용

○ 제명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띄어쓰기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제명 띄어쓰기(제1조)
○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개정(제1조, 제2조, 제3조)
○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삭제(제4조부터 제8조 까지)
○ 제9조의 제목을 변경(제9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정비(제10조, 제11조)

규 칙

정선군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9일

정선군 규칙 제1295호

정선군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을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 상징물 조례」"를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정선군 상징물 조례」"를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을 "제7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으로, "심사"를 "심의"로, "결정 통지하여"를 "통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심사"를 각각 "심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4호,제8호"를 "제3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8호"로, "판매할시 상품 1점당"을 "판매할 경우 상품 한점당"으로, "10/1,000"을 "100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규정한 이외의"를 "따른"으로, "심사"를 "심의"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상호협약의 체결) 상징물의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등의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료징수"를 "제8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로, "규정된것 을"을 "규정된 것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3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8호의 상징물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상징물의 목적 및 품위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농업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부서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내용을 별지 서식의 정선군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1, 별표4 및 별표5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정선군 상징물 사용승인대장

□ 관리부서:
□ 상징물의 종류:

승인번호	승 인 년월일	인 적 사 항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기간	비고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상징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필요-----------------------------------.
제2조(사용승인) ① 「정선군 상징물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 일이내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 야 한다.	제2조(사용승인) ①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 심의------------------- 통지하여 -----------.
②조례 제8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심의--------------.
③제2항에 의거 심사를 생략할 경우 해당관리부서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 심의---.
제3조(사용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사용료) -- 제8조에 따른 -------------------- 각 호----.
1.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4호,제8호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할시 상품 1점	1.-- 제3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8호------------------------------ 판매할 경우 상품 한

당 판매할 금액의 10/1,000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점당 ------- 100분의 1------------------------.
2. 제1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	2. ----- 따른 ------------------------------------- 심의 ----------.
제4조(사용료의 납부기간) 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약의 체결) 상징물의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등의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료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것 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방법) ---- 제8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 규정된 것을 --------------------------------.
제6조(사용승인 범위) ①조례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제4호, 제8호의 사용범위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준한다.	제6조(사용승인 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8호의 상징물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상품	2. 그 밖에 ---------------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상징물의 목적 및 품위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①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	제7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2. (생 략) 3. 정선군 생약초공동브랜드 : 농업축산과 4.·5. (생 략) ②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조례 제3조제1호, 제2호를 사용승인한 경우에는 사용승인대장(별표1)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조례 제3조제4호의 경우 별표 4의 서식에 의거 관리한다. <전부개정 2006.09.30> 3.조례 제3조제8호의 경우 별표 5의 서식에 의거 관리한다.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 농업기술센터 4.·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관리부서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내용을 별지 서식의 정선군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2017년 하반기 조직개편(2017. 7. 1.)으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일부 상징물의 관리 부서를 변경함.

주요내용

○ 정선군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을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함.
○ 사용료 요율 표기법을 10/1,000에서 100분의 1로 변경함
(제3조제1호)
○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시기 및 방법을 상호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제4조)
○ 사용승인 범위를 개정함 (제6조제2항제3호)
○ 정선군 생약초공동브랜드 관리부서를 농업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함. (제7조제1항제3호)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휘 정비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9일

정선군 규칙 제129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을 “정선군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정원관리 기관별”을 “정원관리기관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선군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본조제목개정 2009.07.14.>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

개정이유

○ 저출산 및 가축질병 대응체계 보강을 위한 전담인력 증원 및 읍면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에 따른 전담인력 증원.
○ 정부 정책수요 반영 및 지역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 인력 재 배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

주요내용

○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별표)
- 총 597명 ⇒ 총 601명 (증 4명)
○ 조정내역
1. 분야별
가. 출산 대응체계 전담인력 보강 (증 1명),
나. 가축전염병 전담인력 보강 (증 1명),
다. 읍면 복지허브화 전담 인력보강 (증 2명)
2. 부서별
가. 자치행정과 (증 1명) ⇒ 저출산 대응 전담인력,
나. 농업기술센터 (증 1명) ⇒ 가축질병(AI) 대응 전담인력,
다. 신동읍 (증 1명), 여량면 (증 1명) ⇒ 맞춤형복지팀 신설

[별표]

정선군지방공무원직렬별정원표(제2조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합 계			601	265	11	114	23	93	95
정 무 직			1	1					
일 반 직			577	262	11	93	23	93	95
지 도 직			19	0	0	19	0	0	0
연 구 직			4	2	0	2	0	0	0
정 무 직			1	1					
일반직	4급	지방서기관	1	1					
	4급·5급	지방서기관·행정사무관	2	2					
		지방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시설사무관	0						
		지방기술서기관·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1			1			
	5급	소 계	25	10	2	3	1	4	5
		행정	5	3	2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시설	4	4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녹지	1	1					
		행정·환경·시설·공업	1				1		
		행정·농업·사회복지·시설	5					3	2
		행정·농업·환경·시설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농업·농촌지도관	1			1			
		의무	1			1			
	6급	소 계	136	67	3	19	6	20	21
		행 정	48	29	3		1	6	9
		세 무	3	3					
		농 업	3			3			
		녹 지	2	2					
		시 설	10	10					
		환 경	1	1					
		사회복지	0						

		행정 · 세무	5	3				2	
		행정 · 사회복지	11	5				4	2
		행정 · 농업	4			1			3
일반직	6급	행정 · 녹지	1	1					
		행정 · 전산	2	1				1	
		행정 · 공업	2	2					
		행정 · 보건	1			1			
		보건 · 식품위생 · 간호 · 의료기술	1			1			
		행정 · 환경	4	2				1	1
		행정 · 시설	5	4				1	
		농업 · 수의	1			1			
		농업 · 시설	1			1			
		농업 · 시설 · 녹지						3	
		시설 · 공업	1				1		
		공업 · 농촌지도사	1			1			
		농업 · 농촌지도사	1			1			
		행정 · 농업 · 녹지						1	
		행정 · 농업 · 사회복지	2					1	1
		행정 · 환경 · 공업	1				1		
		행정 · 환경 · 보건	1				1		
		행정 · 농업 · 시설 · 녹지	5						5
		방송통신 · 전산	1	1					
		보건 · 간호 · 의기	6			6			
		보건진료	3			3			
		운전 · 기계운영	3	3					
		사무운영 · 시설관리	2				2		
	7급	소 계	177	91	1	30	6	23	26
		행 정	56	34	1			8	13
		세 무	8	7					1
		사회복지	9	4				3	2
		전 산	1	1					
		공 업	1	1					
		농 업	3			3			

일반직	7급	수 의	1			1			
		녹 지	2	2					
		보 건	7			7			
		의료기술	3			3			
		간 호	4			4			
		환 경	4	2			2		
		시 설	22	14		1	1	2	4
		방송통신	1	1					
		행정・사서	1	1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9			1		3	5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5	3			2		
		행정・시설	7	5			1	1	
		행정・방재	1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2			2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간호	1			1			
		보건진료	4			4			
		토목운영	1	1					
		통신운영	0						
		기계운영	3					2	1
		운 전	4	3		1			
		사무운영	2	1				1	
		운전・기계운영	1	1					
		사무운영・시설관리	1	1					
	8급	소 계	133	61	3	24	7	22	16
		행 정	31	18	1		1	6	5
		세 무	2	2					
		사회복지	6	2				2	2
		전 산	1	1					
		공 업	4	2			2		

일반직	8급	농 업	4			1		2	1
		녹 지	3	3					
		보 건	0						
		의료기술	2			2			
		식품위생	1			1			
		간 호	1			1			
		환 경	2	1			1		
		시 설	17	10			1	4	2
		전산·방송통신	2	2					
		방재안전·환경	2	2					
		행정·세무	6	1				4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2		1			4
		공업·시설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6			6			
		간호·의기	1			1			
		환경·녹지	1	1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4			4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1				1		
		시설관리	1	1					
		운 전	5		1			4	
		속 기	1		1				
		소 계	101	30	2	15	3	24	27
		행 정	23	8		1		6	8
		세 무	3						3
		사회복지	15	4				5	6
		공 업	3	2			1		
		농 업	5			2		2	1

일반직	9급	녹 지	1	1					
		환 경	2	2					
		보 건	5			5			
		의료기술	1			1			
		시 설	3	2				1	
		행정·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전산·방송통신	2	2					
		시설·전산	1	1					
		토목운영	3	3					
		전화상담운영	0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3			1		1	1
		열관리 운영	0						
		운 전	17	2	1	4	1	4	5
		사무운영	7	2		1		3	1
		시설관리	4		1			1	2
		통신운영·전기운영	0						
	소 계		1	0	0	1	0	0	0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관)		1			1			
지도직	지도직 소계		19	0	0	19	0	0	0
	4·5급상당	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1			1			
	5급상당	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0						
	5급상당	농촌지도관	1			1			
	6급상당	농촌지도사	17			17			
연구직	연구직 소계		4	2	0	2	0	0	0
	6급상당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2			2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9일

정선군 규칙 제1297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한다”를 “임명한다”로 한다.
제5조 중 “보한다”를 “임명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한다”를 “임명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한다”를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하되”를 “임명하다. 다만,”로, “의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보한다”를 “임명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보한다”를 “임명한다”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한다”를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선읍장·고한읍장·사북읍장·신동읍장·여량면장·북평면장”을 “고한읍장·사북읍장·신동읍장·여량면장·북평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남면장”을 “정선읍장·남면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보한다”를 “임명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직급) 본청 실장·과장·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한다.	제3조(직급) ---------------------------------- 임명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5조(직급) 정선군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5조(직급) -- 임명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생 략)	제6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② ----------------- 임명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직급) ① 정선군보건소에 두는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직급) ① -- 임명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	② -- 임명한다. 다만, --에 따라---

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중에서 보한다.	-------------------임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직급) 수질환경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직급) -- 임명한다.
제12조(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면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제12조(직급) -- 임명한다.
1. 정선읍장·고한읍장·사북읍장·신동읍장·여량면장·북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1. 고한읍장·사북읍장·신동읍장·여량면장·북평면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3. 정선읍장·남면장--
제14조(직급) 신동읍 함백출장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제14조(직급) --- 임명한다.

개정이유

○ 읍면장 복수직렬을 조정하여 행정조직의 활력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읍면장 직급 복수직렬을 조정함. (제12조)

구 분		직 급
현행	정선읍장 고한읍장 사북읍장 신동읍장 여량면장 북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화암면장 임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남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조정	고한읍장 사북읍장 신동읍장 여량면장 북평면장	현행과 같음
	화암면장 임계면장	현행과 같음
	정선읍장 남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9일

정선군 규칙 제1298호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시행규칙"을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를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선군암헌후원의집(이하 "후원의집""을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이하 "후원의 집""으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암헌 후원의 집 입주 신청서"로, "후원의집을 관리하는 읍·면장"을 "후원의 집을 관리하는 읍·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자 증명서(「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중 "조례 제5조제2항제3호"를 "조례제5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 증명서
제4조 중 "자에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 은"을 "사람에게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를"을 "별지 제2호서식 암헌 후원의 집 사용 허가서를 교부"로 한다.
제5조 중 "정선군공유재산 관리조례시행규칙"을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암헌 후원의 집 입주 신청서

1. 건물명칭 : 암헌 후원의 집
2. 소 재 지 :
3. 입주기간 :
4. 입주조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5. 입주자수 :
6.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가족관계		연락처	
기타사항			

위와 같이 암헌 후원의 집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비 고
구비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통 2. 장애인 증명서 1통 3.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 (※해당자에 한함)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 증명서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시행규칙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
제2조(입주신청) 정선군암헌후원의집(이하 "후원의집"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원의집을 관리하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입주신청) ①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이하 "후원의 집"-------------------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암헌 후원의 집 입주 신청서-- 후원의 집을 관리하는 읍·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급자 증명서(「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장애인 증명서(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조례제5조제2항제3호------------------------
3.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	3. 그 밖에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 증명서
제4조(사용허가) 읍·면장은 후원의집 입주가 승인된 자에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 은 날부터 2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 사람에게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 별지 제2호서식 암헌 후원의 집 사용 허가서를 교부 --.
제5조(준용) 후원의집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공유재산 관리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준용)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유

○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 필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민원서비스 제공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전자정부법」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주요내용

가. 제명을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시행규칙에서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암헌 후원의 집 입주 신청 구비서류의 최소화를 위해 행정정보 공공 이용 동의사항을 추가함. (제2조)